

# 지방재정 손실비리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설 특정감사 결과보고

## 감사목적

- ◆ 민간보조 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를 통해 향후 보조금 관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운동의 민간 확산을 도모.

## I 감사 개요

### 1.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범위)
- 2015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7411(2014.12.15)】

### 2.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5. 6. 8. ~ 6. 11.
- 감사대상 : ●●●●센터
- 감사범위 : 2013. 5. 1. ~ 2015. 4. 30.
- 감사 중점사항
  -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실태
  -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및 합법성 등
- 감사반원 : 1개반 3명

1. 총 평

○ ●●●●센터 특정감사 실시 배경은

부정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지방재정 손실비리) 특정감사 실시 일환과 동시에 2000년도에 개소하여 운영재원의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해당부서(사회복지과)에서 연1회 지도점검만 실시하고 있어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감사에서

●●●●센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규정 및 회계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익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항이 다수 지적되어, 8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4, 주의4), 재정상 조치(환수 221,720원/ 1건), 신분상조치(자체 징계 2명) 처분 요구함.

2. 지적사항 목록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공동교육비(가족캠프) 운영 업무 부적정 ⇒ 강사, 직원 자녀 4명 사용료 등 반납	시정	221		
2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 9건 1,218,300원	주의			
3	불용품(사업용 차량) 매각 부적정 ⇒ 2건 수의 계약	주의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4	●○○○ 지원 부적정	시정			
5	외식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시정		2명 징계	
6	공사 집행 부적정 ⇒ 수의계약 부적정, 공사감독 소홀 등	주의		2명 징계	
7	폐식용류 수거판매 관련 ⇒ 수익금을 장학사업에 사용토록 요구	시정			
8	지도 · 감독 소홀 (소관부서:사회복지과)	주의			

※ 자체 인사규정에 의거 총괄책임자, 결정책임자 2명 징계 요구

## IV

##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1. 공동교육비(가족캠프) 운영 업무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2013.8.8.일부터 2013.8.9.일 1박2일간 실시한 꿈나래 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교육대상인 참여주민 및 자녀 34명을 제외한 강사(2명) 및 직원자녀(2명)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숙박비, 식비 등) 및 간식비 등을 지출하여 당초 목적인 계획에 맞지 않게 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 또한 참여대상(부모 14명, 자녀 20명)을 인솔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3-4명의 직원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9명의 직원이 캠프에 참여하여 캠프 예산집행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수 221,720원

## 2.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격려품 지급대상은 소속 상근직원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유공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업무추진 유관기관 등의 직무활동에 집행하도록 있다.

또한,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축하금 및 격려금 목적으로 5건 150,000원을 현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센터 운영위원 선물 구입으로 4건 1,068,300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3. 불용품(사업용 차량)매각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불용품의 처리)에 의거 물품 중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은 불용처리를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의거 불용품을 매각할 경우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사업용 차량을 매각함에 있어 관계 규정에 의거 일반입찰로 매각하지 않고 93루▶▶ 차량은 3인의 견적서를 받아 이중 높은 금액을 제시한 ◇◇◇와, 85자▷▷ 차량은 단일견적을 받아 ●●●●

(주)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4. ○○기업 지원 부적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공동체로 인정된 단체는 「○○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 운영과 판로개척 등 ○○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동 안내(지침)에 의거 ○○기업의 지원기간은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으로 하며, 지자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 추가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공동체인 □□□□를 지원함에 있어 ○○인정일이 2011.01.31일 이고 지원기간이 2014.01.30일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무상임대해 주고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5. 외식사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의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식자재 업체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반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수구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란에 2013년, 2014년, 2015년 매년도 「□□□□ □□□□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를 게시한 후

모집에 응모한 업체 중 업체를 「○○○○센터 운영규정」을 근거로 만든 자체 운영규정인 「○○○○센터 식자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 업체를 선정하였다.

- 또한 ○○○○센터는 2014, 2015년도 식자재 구입 공고에 있어 양곡류(쌀류) 분야의 납품업체 조건으로 '생산자 증명서를 가진 업체'로 한정하여 모집 공고 하였으나, 단독 응모한 ■■■■가 생산자 증명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첨부) 양곡류(쌀류) 분야 납품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신분상 자체징계 2명

## 6. 공사 집행 부적정

### <수의회약 부적정>

- ○○○○센터에서는 인천타워대로238 ◇◇◇◇에 위치한 『■■■■■■■■■■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 외 2개 업체로부터 32,090천원 등의 견적서를 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주)■■■■과 수의회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공사는 추정가격 32,090천원으로 지정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업체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의회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공무원가계산 검토소홀>

- 또한 『■■■■■■■■■■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수량산출서 등이 없이 3개 업체로부터 물량 등이 나와 있지 않은 견적가격만을 제출받아 계약 체결하였으며, 공사의 범위와 공사 목적물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설계도면이 부실하여 설계

자의 의도 및 계약수량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등 공사 원가 계산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공사감독 소홀>

- 『■■■■ ■■■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독공무원 미지정 및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생략한 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착·준공 신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공사감독자 확인을 거쳐 문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된 문서에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일자를 표기하여야 하나 미 접수하는 등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자체징계 2명

## 7. 폐식용류 수거판매 관련

- ○○○○센터 2012-244(2012.10.22)호에 의거 ○○○○에서는 폐식용류를 학교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하여 수거된 폐식용류의 일부는 재활용비누를 제조판매하고 나머지 식용류는 일반업체에 유상매각하겠다는 계획서를 연수구청(일자리창출과 ■■■)에 제출
- 연수구청 ■■■지원 부서와 학교지원 부서간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관내 초등학교에서 무상으로 폐식용류를 자활센터에 지원  
(무상지원된 폐식용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폐식용류를 제공한 학교에 장학사업 확대 계획 수립)
- 그러나 ○○○○센터에서는 최근 2년간(2013.05 ~ 2015.04) 무상 수거된 폐식용류의 가격이 41,223,300원 임에도 폐식용류를 제공한 학교에 장학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사업 참여자 자녀 2명에게 각각 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수익금을 장학사업에 사용)

## 8.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감독 등)의 규정에 의거 ●●●●센터 전반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래 공동교육비 운영 업무 부적정 외 6건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